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16(금)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0(화)
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7.21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○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가.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수수료 및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조항 삭제 (안 제8조 제2항)

나.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조항 삭제(안 제10조 제1항)

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안 변경 (안 제11조 제1항)

라.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량하는 규정 신설(안 제17조 제3항)

마. 안 제17조 제3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.

바. 업종을 달리하는 2개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 업종으로 적용 변경(안 제29조 제2항)

사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모범음식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50%, 30% 상수도사용료 감면토록 조항 별도 체계화 신설 (안 제37조 제1항)

아. 수용가 수도사용금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누수등으로 과다 부과된 사실 및 누수 지점수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시 부과금액 감면 조항을 신설(안 제37조 제3항)

자. 수도계량기의 기물 훼손 망실에 대하여 동파 조항 삽입(안 제41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 조례는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, 수도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먼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모범음식점 및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50%, 30% 상수도사용료 감면과 수도사용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금액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

- 계량기 설치의 경직성완화·준공검사 수수료조항 삭제등 수용가 불만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.

○ 기타 법령의 형식·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은?	○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 1년에 한번 심사하여 선정함.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